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4-4호

별정우체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별정우체국의 우편취급수수료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55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4년 1월 13일

우정사업본부장

별정우체국 우편취급 수수료

1. 접수우편물에 대한 수수료

대상 업무	취급 수수료
1. 통상우편물	
가. 우표류+요금증지+별·후납	
1) 월 취급금액 50만원까지	취급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
2) 월 취급금액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	취급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
3) 월 취급금액 100만원초과 1,000만원까지	취급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4) 월 취급금액 1,000만원 초과	취급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
2. 소포우편물	
가. 창구소포·국제소포	
월 취급금액	취급금액의 100분의 12 상당액
나. 방문소포	
1) 월 취급금액 300만원까지	취급금액의 100분의 12 상당액
2) 월 취급금액 300만원초과 500만원까지	취급금액의 100분의 9 상당액
3) 월 취급금액 500만원 초과	취급금액의 100분의 6 상당액
3. 국제특급우편물	
월 취급금액	취급금액의 100분의 11 상당액

※ 취급금액 : 판매 또는 접수금액에서 등기·부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

2. 월 지급 상한액 : 300만원(300만원 초과분은 미지급)

부 칙

1.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1-55호(2011.10.4.)고시는 폐지한다.